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7호 2015. 8. 18.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5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6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696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5-697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3
- 하동군 공고 제2015-698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하동군 공고 제2015-699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 하동군 공고 제2015-700호 하동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하동군 공고 제2015-70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2
- 하동군 공고 제2015-702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5
- 하동군 공고 제2015-703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0
- 하동군 공고 제2015-705호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15-707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하동군 공고 제2015-71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9
- 하동군 공고 제2015-714호 손실보상협의서 공시송달 공고..... 95
- 하동군 공고 제2015-715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안 입법예고 97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5-5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6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촌길 14-5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8.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37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600-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촌길 14-5	20150810	20070618	거문고형의 뒷산을 끼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60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56-95	20150810	20070618	동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9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93	20150810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2	20150810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4	20110729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 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63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10	20150810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140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01	20150810	20080402	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8	20150810	20080402	옥종면의 중심도로로서 옥종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115-4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657-1	20150810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하동군 공고 제2015-696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별표 1)
 - 진입로·출입로의 점용료 : 당초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의 점용료 부과 기준 신설
 - “인접한 토지가격”을 “닿아있는 토지가격”으로 명확화
 - 정액 부과 점용료의 지가 변동에 따른 재조정은 삭제

- 점용료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납
- 점용료 조정 산식 개정(안 제5조 별표2)
 -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 조정 산식을 간략하게 개정
-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7조)
 -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용료 반환 신청 및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여부 통지
- 과오납금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 과오납금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8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521, FAX (880-250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별지서식 포함)

(6) 제 43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 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하 동 군 공 보

(8) 제 437 호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9) 제 437 호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 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 한 금액
2. 수도관, 전 력구, 자중정착 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산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자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 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하 동 군 공 보

(10) 제 437 호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하 동 군 공 보

(11) 제 437 호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37 호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하동군 공고 제2015-697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지난10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 전무, 상위법 폐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의 주요 내용
 - 부과대상자(제2조)
 - 도로의 신설, 개축 등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토지
 - 부과대상 토지의 범위(제3조)
 - 도로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의 구역내 토지
 - 부과액의 결정(제4조)
 -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8일까지 하동군 (건설교통과, 전화 880-2521, FAX 880-250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제 43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과태료 상한선 개정(안 제3조 별표 1)
 - 과태료 상한선을 당초 2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조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연번, 문구 등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8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521, FAX(880-250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18) 제 437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군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699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 방법 개정(안 제2조 별표 1)
 - 적발 횟수별 부과방식에서 점용면적당(10만원/㎡) 부과방식으로 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연번, 문구 등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8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521, FAX 880-250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조제1항의 과태료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 방법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정비·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스스로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고를 받은 자가 그 계고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고를 생략하고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유형을 적용한다.

⑥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납부고지) ① 과태료 처분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위반 내용	과태료
1. 도로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상점, 점포 등이 도로상에 상품·물건 진열·적치, 상행위(노점상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도로위에 건축자재 및 제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시멘트, 철재, 목재, 골재, 석재, 블록, 벽돌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2.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위에 각종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파손, 손괴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도로위에 각종 기계기구류 및 자재를 이용하여 조립, 수리, 용접, 제작 등의 작업행위와 진열·적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모터 펌프, 타이어, 간판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하 동 군 공 보

(24) 제 437 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과태료 영수증 통지서(시·군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수납기관 :	
귀하	귀하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수납기관 :	
귀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5-700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8 월 7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건축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개정(안 제4조)
 - 나. 건축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다. 적용의 완화규정 중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신설(안 제12조 제4항)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 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신설(안 제12조 제5항)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건축완화 기준 신설
(안 제12조 제6항)

라.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 기존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
치로 법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증축
기준 신설(안 제13조 제5호)
- 기존건축물이 법령 등이나 행정의 여건변화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기준 신설(안 제13조 제6호)
-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기준 신설(안 제13조 제7호)

마.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신설(안 제18조의2)

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안 제19조의2)

사.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제27조)

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2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 인은
2015년 8월 26 일까지 하동군(도시건축과, 전화 880 -2604,
FAX 880-2109)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28) 제 43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하동군의”를 “하동군 행정구역의”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을 “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5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1명 이상 20명”을 “2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7항제1호라목”을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며, 4호 중 “위락 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로 7호 중 “제5조제4항제3호”를 “제5조 제4항제3호”로 같은 항 제8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 그 밖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30) 제 437 호

3. 4. 5. 삭제

③ 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1항에서 3항의 본문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

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와 기타 직무태만
-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2. 창고
 -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하 동 군 공 보

(32) 제 437 호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12.12.>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3조제4호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제5호에서 제7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조”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고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제19조제3항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야 또는 농지에 건축하는 20제곱미터미만의 농막
2. 공장제작 20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저온창고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를 “영 제27조제1항 제5호와 제10호에 따라”로 하고,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의 건축물
- 제10호 중 “제48조”를 “제4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의 “하천 및 도랑부지”를 “지목이 하천 및 구거 인 공공부지”로 한다.

제25조의 별표 3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삭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37 호

- 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떨어져야 한다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제29조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u>건축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및 「<u>건축법 시행규칙</u>」(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 「<u>건축법 시행령</u>」 및 「<u>건축법 시행규칙</u>」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하동군의</u>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하동군 행정구역의</u>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건축위원회</p>	<p>제2장 건축위원회</p>
<p>제3조(설치) <u>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u> <u>규정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u>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p>	<p>제3조(설치)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u>건축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u>건축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11명 이상 2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u>제5조제7항제1호라목</u>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25명 이상 3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u>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u>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36)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 ·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30.조1900></p>	<p>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u>제5조 제4항의 규정</u>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u>제5조의5 제1항</u>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4.15.조1855></p>	<p>3. (현행과 같음)</p>
<p>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u>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u>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조1855></p>	<p>4.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u>건축허가</u>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조1855></p>	<p>5.(현행과 같음)</p>
<p>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조1855></p>	<p>6.(현행과 같음)</p>
<p>7. 영 <u>제5조제4항제3호</u>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7.영 <u>제5조의5제1항제4호</u>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8.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8.(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38)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가. <u>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u></p> <p>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p> <p>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라.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p> <p>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p> <p><u>10. <신 설></u></p> <p><u>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u> <u><개정 2009.4.15.조1855></u></p>	<p>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u>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삭제</u></p> <p>9.(현행과 같음)</p> <p><u>10. 그 밖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u></p> <p><u>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u>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 <u>가. 위원회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u> <u>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u></p>

현 행	개 정 안
<p>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p>	<p>2. 위원회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p>	<p>3. 삭제</p>
<p>4.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동별 층수의 1개층 이내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p>	<p>4. 삭제</p>
<p>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p>	<p>5. 삭제</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제7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하 동 군 공 보

(40)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③ <u>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u></p>
<p>④ 위원장은 <u>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u>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u>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u>⑥ <신 설></u></p>	<p>⑥ <u>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 행	개 정 안
<p><u>⑦ <신 설></u></p> <p><u>⑧ <신 설></u></p> <p>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소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u>소위원회</u>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u>소위원회</u>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u>소위원회</u>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이 된다.</p> <p>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u>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u></p> <p><u>⑧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42)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의2<신 설></u></p>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u>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u><신 설></u>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u>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u>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u>와 기타 직무태만</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p>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p>제3장 건축물의 건축</p> <p>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p>제12조(적용의 완화)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u>※[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u> 2.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44)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p> <p>④ <신 설></p> <p>⑤ <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p> <p>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축사 및 작물 재배사</u> 2. <u>창고</u> 3. <u>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u>

현 행	개 정 안
<p>⑥ <신 설></p> <p>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u>도시계획</u>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p>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p>제13조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u>도시·군계획시설</u>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하 동 군 공 보

(46)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u>5. <신 설></u></p> <p><u>6. <신 설></u></p> <p><u>7. <신 설></u></p> <p>제 14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①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u>법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u>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9.4.15.조1855></p> <p>② 건축 또는 주택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p>	<p><u>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u></p> <p><u>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u></p> <p><u>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u></p> <p>제 1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u>법 제 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u>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 또는 주택 민원 실무 담당자가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제15조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15.조1855>	② (현행과 같음)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예치금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 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48)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조1855></p>	<p>3.(현행과 같음)</p>
<p>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 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16조 (현행과 같음)</p>
<p>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17조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30.조1900></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p>제23조의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p>제2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25조 (현행과 같음) <u>※별표 3 일부개정</u></p>
<p>제26조(맞벽건축)① <u>영 제81조제1항제2호</u>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p> <p>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간의 높이차이는 최고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p>제26조(맞벽건축)① <u>영 제81조제1항제3호</u>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50) 제 437 호

현 행	개 정 안
<p>제6장 건축물의 높이제한</p> <p>제2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앞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앞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앞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앞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p>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앞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장 건축물의 높이제한</p> <p>제27조 <삭 제></p> <p>제2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p> <p>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p> <p>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1. <삭 제></p> <p>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 신설</p>	<p>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떨어져야 한다</p> <p>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p>

하 동 군 공 보

(53) 제 437 호

[별지 제1호서식]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m ²		
용도	주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하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공사종류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받고자 하는 규정						
인접건물 및 대지에 미치는 영향						
기 타						

건축완화 신청서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하동군건축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1. 인접대지 및 건축물 현황도 1부
2. 신청건물 배치도 1부

하 동 군 수 귀 하

하 동 군 공 보

(54) 제 437 호

[별표 1] <개정 2010.6.3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1.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가설건축물 포함)

건축(용도변경)하고자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9,4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
	기 타	20,000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4,0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0,00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0,0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10,000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10,000
30만 제곱미터 이상		1,62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청부분 면적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

가. 면적 산정이 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제1호 수수료를 준용

나.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건당 2만원

[별표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인수
1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0.3인 0.4인 중급기술자 0.3인 0.4인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0.5인 중급기술자 0.5인
3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0.7인 중급기술자 0.7인
5천 제곱미터 이상	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이하 절사)

하 동 군 공 보

(56) 제 437 호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가호내지 라호의 건축물중 그 규모 이하인 것	· 1.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5미터 이상
바. 가호 내지 라호의 건축물중 그규모 이하인 것	· 1미터 이상

[별표 4] <개정 2010.6.30.>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제31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는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하 동 군 공 보

(60) 제 437 호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는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5] <신설 2010.6.30.>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제22조의3제1항 관련)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 터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5퍼센트	7퍼센트	10퍼센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하동군 조례 제2015-70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3조 중 “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8,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경상남도세조례」 ”를 각각 “ 「경상남도 도세 조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및 「하동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하동군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 ----- -----.
1. 개인	1.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u>8,000원</u>	가. ----- <u>10,000원</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 -----.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세율)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 ----- ----- -----

하동군 공고 제2015-702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유사·중복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명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유사·중복된 조문 정리
 - 조례 제4조 각호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유사 및 중복
→ 제 5조제1항 정비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193, FAX 880-21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66) 제 43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군수는 <u>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인력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군수는 <u>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u></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5-703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 사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정비
 - 사용료의 반환 규정 : 조례 제11조제1항
 - 계약보증금의 보증금 예치관련 규정 : 조례 제17조제1항 및 2항
- 사용료 반환시점의 명확화 : 조례 제11조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194, FAX 880-21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 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때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반환할 수 있다.</u></p> <p>1. ~ 2.(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u>일할 계산으로 한다.</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반환한다.</p> <p>1. ~ 2.(현행과 같음)</p> <p>② ----- <u>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u></p>
<p>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u>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 할 때에는 <u>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u></p>	<p>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 <u>보증금을 분할 납부 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u></p> <p>② ----- -- <u>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u></p>

하동군 공고 제2015-705호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5년 8월 11일 ~ 8월 31일
- 장 소 : 하동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5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5. 9. 23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5. 8. 11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74) 제 437 호

(별지 제1호)

가 격 열 램 부

지역명 :

일련 번호	소재지	본 번	부 번	전체면적(m ²)		공시면적(m ²)		주건물 구조	가 격	비 고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 건물 연면적			

(별지 제3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m ²)
	용도지역	건물연면적(m ²)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4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하동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845호 주택을 표준주택로 선정하고 2015. 1. 1기준으로 8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하동군(경남도)홈페이지 건축토지정보(토지정보) 내의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셔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15. 9. 24까지 통지하게 됩니다.

(별지 제5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처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소재지	③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④ 산정 가격	⑤ 검증 가격	⑥ 열람 가격	⑦ 의견 가격	⑧ 의견검증 가격	⑨ 부 평 위 조정가격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정해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안 제3조)
 - 법령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 변경(안 제11조)
 -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 대부료의 조정 기준 변경 (안 제33조)
 -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을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개정 (안 제34조)
 - 연간 대부료 100만원 초과인 경우 연 4회까지 분납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하동군 주금고의 정기예금 표준 이율 만큼의 이자를 붙임
 - 조성원가 범위에 인건비 추가(안 제38조)
 -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로 개정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39조)
 - 2003년 12월31일 이전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중 건물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개정 (안 제62조)
 - 변상금 100만원 초과인 경우 연 4회까지 분납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하동군 주금고의 정기예금 표준 이율만큼의 이자를 붙임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하동군 주금고의 정기예금 표준 이율만큼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 055-880-2303 / FAX 055-880-2279, jiny4710@korea.kr)에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80) 제 43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간사는 재산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 동 군 공 보

(82) 제 437 호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를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연도 하동군 주공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32조제1항의 하한을 밑도는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상회할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38조 본문 중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제6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도는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상회할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84) 제 437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할 사항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p> <p>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심의회 간사는 재산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3.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u>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u>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u>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u>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u>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 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u>100분의 10</u>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u>100분의 5</u>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략)</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 3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고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인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6.조1822, 개정 2010.6.30.조1902>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32조제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상회할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p>② (생략)</p> <p><신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도는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상회할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p>② (현행과 같음)</p> <p>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p>

하동군 공고 제2015-71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일체 정비하여
 -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우편”이란 용어를 지방세기본법에 달리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 (안 제2조제2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신청서 제출 기한을 개정 (안 제7조제1항)
 - “보통우편”이란 용어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개정 (안 제8조제2항, 제9조)
 -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규정 (안 제13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개정 에 따라 조문의 제목을 개정 (안 제1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개정 (안 제23조, 제25조제1항)
 - 국세징수법 준용 규정에 맞게 개정 (안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880-2272, FAX 880-2279)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9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를 “군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또는 2명 이상의”를 “또는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을 “성년자”로,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을 “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u>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u>기한만료일 3일</u> ----- -----</p> <p>- . <u>다만, 군수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u>보통우편</u>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 략)</p>	<p>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u>일반우편</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92) 제 437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u>보통우편의</u>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u>보통우편</u>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u>우편물접수인</u>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9조(<u>일반우편</u> 송달부) <u>일반우편</u> ----- -----<u>일반우편</u> ----- ----- . ----- -----</p>
<p>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u>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u>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u>가족관계가 있는 자가</u>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u>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u> 법 제64조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16조(공탁 등) ① <u>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u> 법 제72조에 따라 <u>공탁하거나 또는</u> <u>군금고에 예탁(豫託)</u> 할 수 있다. <u>다만, 군금고에 예탁(豫託)할 경우 예탁(豫託)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u> 공탁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u>교부금전의 예탁 등</u>) ① ----- -----<u>군금고</u> ----- ----- .</p>
<p>② · ③ (생 략)</p> <p>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u>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u>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 ----- -----<u>징수할 수 있다.</u> ----- ----- -----<u>부과징수할 수 있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1. 현금·유가증권의 <u>공탁수령증</u></p> <p>2. 국채·지방채의 <u>등록필증서</u></p> <p>3. <u>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 ----- ----- ----- -----.</p> <p>1. -----<u>공탁영수증</u></p> <p>2. -----<u>등록확인증</u></p> <p><삭제></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9조(수색) ① ----- ----- ----- -----<u>또는 제31조에 따</u> <u>른</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p>	<p>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성년자</u> ----- -----<u>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u> <u>공무원</u> -----.</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관에 <u>10일간</u>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1개</u> <u>월간</u> -----.</p> <p>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5-714호

손실보상협의를서 공시송달 공고

경남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3. 위 치 : 경남 하동군 횡천면~청암면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5. 8. 17. ~ 2015. 9. 4.
4. 공 고 대 상 : 아래 내역 참조
6. 협 의 장 소 : 경남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3)
7. 기 타 사 항
 - 토지소유자께서는 위 기한 내에 우리군과의 보상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에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히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하 동 군 공 보

(95) 제 437 호

□ 공고대상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보상금액(원)	소유자		비고
	본번	분할	공부	현실			주소	성명	
횡천면 횡천리	650	650	임	임	112	1,187,200	월평리	배점금	토지
횡천면 월평리	산99-2	산99-8	도	도	50	202,500		박동원	토지
횡천면 월평리	528-1	528-6	천	천	862	9,223,400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263	이병만	토지
횡천면 월평리	496-2	496-3	천	천	110	1,177,000		박봉원	토지
횡천면 월평리	533	533	천	천	116	1,212,200		박민수	토지
청암면 명호리	118-2	118-2	답	답	182	2,857,400	명호리	김재륜	토지
청암면 명호리	124-2	124-2	천	천	102	734,400	명호리	성태주	토지
청암면 명호리	124-3	124-3	천	천	139	1,049,450	명호리	성태주	토지
청암면 명호리	135-2	135-2	답	답	195	3,042,000	148	배갑주	토지
청암면 평촌리	129-12	129-34	답	답	735	19,073,250	339	유삼생	토지
청암면 평촌리	129-12	129-34	답	답	735	1,202,500	339	유삼생	지장물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지방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안 제4조)
 -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주체 적정화(안 제6조)
 -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적합하게 개선(안 제22조)
 - 환수조건을 법령의 범위 내 정함(안 제23조)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2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204, FAX 880-21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양도의 대여금지)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제4항 중 “유지보수비를”을 “공동부담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u>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u></p>	<p>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이하 “군수 외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u></p>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u>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 ----- -----<u>사업시행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현행과 같음)
<p>제22조(양도의 대여금지) ① <u>분양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u></p> <p>②<u>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22조(양도의 대여금지) ① <u>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u></p> <p>② < 삭 제 ></p>
<p>제23조(환매권의 유보) <u>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u>군수는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u>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 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u>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③<u>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u>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u>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u></p> <p>②<u>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u></p> <p>③<u>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u></p> <p>④----- 공동부담금을 -----.</p>